

창고, 제조 및 물류 사업체의 영업 재개 프로토콜: 부록 C

최신 업데이트: (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4일:

- 칸막이가 설치된 큐비클을 포함해, 큐비클에서 일하는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11월 28일에 발행된 임시 **보건 담당관 명령**을 따르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 요구조건은 2020년 11월 30일 오전 12시 01분(PST)부터 2020년 12월 20일 오후 11시 59분(PST)까지 유효합니다.
-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야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직원 및 손님의 입장 증상 점검에 개인이 현재 고립 및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은 특정 소매업체들이 영업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과학자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아래의 영업 재개 프로토콜은 2020년 5월 13일에 발표된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위험도가 낮은 소매업체를 돕는 창고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특정 사업체는 주정부 보건 담당관이 지정한 업종에 요구하는 조건 외에도, 아래 창고, 제조 및 물류 사업체의 영업 재개의 점검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이 문서는 추가 정보 및 자료가 확보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웹사이트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 (2) 신체적 거리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3) 감염 관리를 위한 확실한 조치
- (4) 직원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 (5)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귀하의 영업장 재개 프로토콜을 작성할 때 위 5가지 핵심 영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지침에 적용되는 모든 사업체는 아래에 열거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귀하의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 _____

시설 주소: _____

건축법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 _____

시설의 대략적인 총 평방 피트: _____

A.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직원(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직원)에게는 가능한 한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합니다.
- 직원들의 재택근무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 신체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엇갈리게 배치하거나, 시차 또는 교대 근무 일정을 수립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되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모든 직원은 해당되는 경우 공중 보건국(DPH)의 자가 고립 및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질병으로 집에 머물러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 휴가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격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또는 고용주의 휴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안](#)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와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따른 COVID-19 업무와 관련된 유급 병가와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직원들이 작업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직원 증상 점검](#)을 수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직원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 여부** 관련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원격으로 하거나, 직원이 도착하는 즉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체온을 점검합니다.
-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사례)와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알리면, 고용주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을 실행하여 해당 사례자는 자택에서 고립하고, 작업장에서 사례자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은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추가 노출이 있으면 COVID-19 관리 조치를 추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고용주의 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국의 지침인 [작업장의 COVID-19 대응법](#)을 참조하십시오.
- 직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COVID-19 확진자가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 집단발병을 공중 보건국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로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관리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 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 조사를 위해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시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와줄 것입니다.
-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상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직원이 개인 사무실이나 썼을 때 직원 키를 초과하는 단단한 칸막이가 있는 큐비클에 혼자 있을 때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0년 11월 28일에 발행된 COVID-19 통제를 위한 보건 담당관 명령: 제1계층의 상당한 급증 대응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직원은 문을 닫은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일할 때 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 명령에서 예외 대상이었던 직원의 키를 넘는 단단한 칸막이가 설치된 큐비클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임시 명령이 유효한 기간인 2020년 11월 30일 오전 12시 01분(PST)부터 2020년 12월 20일 오후 11시 59분(PST)까지 유효합니다.

- 직원들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선호됩니다.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직원들과 거리가 충분히 멀고 장벽이 있으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직원들에게 매일 안면 가리개를 세탁 또는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입은 현장의 직원들로 제한합니다. 직원 외의 다른 사람들이 작업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들에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증상 점검과 신체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모든 작업대/구역은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 휴게실, 화장실 및 기타 공용 구역은 다음 일정에 따라 매 시간 소독합니다.
 - 휴게실 _____
 - 화장실 _____
 - 기타 _____
- 휴게실에서 직원 사이에 육(6) 피트 거리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했습니다.
- 소독제 및 관련 용품과 제조업체 지침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COVID-19에 효과적인 손 소독제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직원들이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잦은 휴식 시간을 허용합니다.
- 각 근로자에게 각자의 도구, 장비 및 작업 공간을 할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지는 물건은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및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가 작업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작업 공정을 수정했습니다.
- 근로자들을 신체적 거리두기 및 감염 관리에 관한 지침을 증진하는 동료 교육자로 등록 및 지원합니다.
- 본 프로토콜 사본을 모든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웹사이트에서 본 프로토콜 및 기타 COVID-19 관련 자료의 번역본이 제공되므로 가능한 경우 해당 직원의 모국어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 고용 조건과 관련된 것 이외의 본 점검표에 설명된 모든 정책은 배달 직원 및 제3자로 사내에 머무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 설명하십시오:

B. 신체적 거리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신체적 거리두기 및 감염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느때이든, 현장에 있는 직원 수를 줄였습니다.
- 직원들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증상 확인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경우, 6피트 간격으로 장애물이나 표시를 하여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천 했습니다.
-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혼잡을 최소화하고, 출입 인원을 관찰하고 직원들이 들어올 때 증상을 점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남깁니다. 시설에 직원 출입구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입구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적절한 시간 차를 두고 교대 근무를 배정했습니다.
- 직원들에게 작업장의 모든 구역에서 서로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해당이 된다면, 엘리베이터의 탑승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탑승자 사이에 신체적 거리를 6피트 유지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는 더 작은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모든 엘리베이터 탑승자는 천으로 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크기, 건물의 층수, 일일 직원 및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탑승자에게 적합한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립합니다.
- 해당이 된다면, 계단을 자주 청소 하고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을 개방합니다.
- 사무실, 공용 휴식 공간 및 기타 창고가 아닌 생산 구역의 가구 배치는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합니다.
- 해당이 된다면, 창고 또는 작업현장의 통로는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지정합니다.
- 공용 구역은 직원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최소 6피트 이상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직원 화장실, 휴게실 및 기타 공용 구역은 신체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최대 허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도록 선반 또는 게시판과 같은 운송 보조 물건을 비치합니다.
- 작업 흐름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픽업 및 배송 중에 신체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C.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

- HVAC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이며, 가능한 최대로 작동시켜 환기를 증가시킵니다. 휴대용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고 효율로 교체, 모든 작업장에서 외부 공기 및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타 개조 등을 고려해 봅니다.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곳(화장실 포함)에 비접촉 기기를 설치합니다.
- 시설에 도착하는 방문자들에게 시설 실내 또는 실외에서는 항상(해당되는 경우, 식사나 음료 마실 때는 제외)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착용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직원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면 가리개를 준비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안면 가리개를 준비해 둡니다.
- 방문자들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개인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 관련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이용자들에게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 할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생산현장과 사무실 내부 및 공용 구역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자주 만지는 물건(예: 탁자, 계산대, 문손잡이나 핸들)은 EPA 승인 소독제를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 근무 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소독합니다.
- 시설 전체와 모든 작업대는 적어도 매일 청소하고, 화장실, 자주 만지는 구역/물건은 **매 시간** 청소합니다.
- 화장실은 EPA 승인 소독제를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매 시간마다** 소독합니다:

-
- 안전모와 안면 보호대는 교대 시간이 끝날 때마다 소독합니다.
 - 배달 차량 및 장비는 각 배달 전후에 청소합니다.
 - 배달 차량에는 배달 중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위생용품을 신습니다.
 - 배달 기사 및 기타 배달 담당 직원은 각 배달 지역에서 깨끗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 들어오는 배송물을 검사하고 창고 및 시설에 보관하기 전에 적절한 경우 소독 조치를 실행합니다.
 - 시설 입구나 근처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세정제, 휴지, 쓰레기통을 비치합니다.
 - 선택 사항 - 감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D.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 본 프로토콜을 시설의 모든 공공 입구에 게시했습니다.
- 소매업체는 온라인 매체(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를 통해 영업시간, 안면 가리개 사용, 제한된 수용인원 수, 픽업 및/또는 배송과 관련된 정책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 손님/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우선시 했습니다.
-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매 또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객 및/또는 공공장소에 가면 위험한 고객도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조치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마지막 개정일: